|  |  |  |
| --- | --- | --- |
| **국경간(Cross-border)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상무부 공고 2013년 제87호  국경간(Cross-border) 인민폐 직접 투자의 편리성을 촉진하고, 감독조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유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는 경외투자자(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를 포함. 이하 동일)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외 인민폐를 중국에 가져와 기업 신설, 증자, 지분참여 또는 경내기업 인수합병 등의 외상직접투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외투자자는 국가의 현행 외상투자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유관 정책에 의거하여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와 관련한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2.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에 대한 투자는 응당 외상투자 법률 법규 및 유관 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산업정책, 외자 인수합병 안전심사 및 반독점 심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중국 경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가증권 및 금융파생상품(상장회사 전략투자는 제외)에 투자할 수 없으며, 위탁대출에 사용할 수도 없다.  4. 상무주관부문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에 대한 회답문건에 “경외 인민폐 출자” 문구와 인민폐 출자 금액 및 본 공고 제3조의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회답문건을 적시에 동급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 외환 등 부문에 참조 발송한다.  5. 경외투자자가 기존 출자 화폐의 종류를 외화에서 인민폐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계약 또는 정관에 대한 심의비준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외상투자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규정에 요구에 따라 유관 부문과 은행에 가서 등기, 계좌 개설, 자금 지불 등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6. 경외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에서 획득하고 경외로 지불하지 않은 인민폐 이윤, 지분양도/감자/청산/선행 회수 투자소득을 인민폐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상술한 조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의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상자함[2011]889호)와 <상무부 판공실의 상무시스템이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 관리를 시행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상판자함[2011]1171호)는 본 공고 시행일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이전에 상무부가 발표한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에 관한 규정이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상무부  2013년 12월 3일 |  | **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  **有关问题的公告**  商务部公告2013年第87号  为推进跨境人民币直接投资便利化，完善监管措施，现就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本公告所称“跨境人民币直接投资”是指境外投资者（含港澳台投资者，下同）以合法获得的境外人民币来华开展新设企业、增资、参股或并购境内企业等外商直接投资活动。境外投资者依照国家现行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规章和有关政策办理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有关手续。  二、跨境人民币直接投资及所投资外商投资企业的再投资应当符合外商投资法律法规及有关规定的要求，遵守国家外商投资产业政策、外资并购安全审查、反垄断审查的有关规定。  三、外商投资企业不得使用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资金在中国境内直接或间接投资于有价证券和金融衍生品（战略投资上市公司除外），以及用于委托贷款。  四、商务主管部门在跨境人民币直接投资批复中应写明“境外人民币出资”字样、人民币出资金额及本公告第三条要求，并将批复文件及时抄送同级人民银行、海关、税务、工商、外汇等部门。  五、境外投资者申请将原出资币种由外币变更为人民币的，无需办理合同或章程变更审批，可按照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定要求，到有关部门和银行办理登记、开立账户、资金汇兑等手续。  六、境外投资者以从中国境内所投资的外商投资企业获得但未汇出境外的人民币利润以及转股、减资、清算、先行回收投资所得人民币开展直接投资的，仍按照有关规定执行。  七、以上措施自2014年1月1日起实施。《商务部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有关问题的通知》（商资函[2011]889号）和《商务部办公厅关于商务系统实施跨境人民币直接投资管理相关问题的通知》（商办资函[2011]1171号）自本公告实施之日起停止执行；此前商务部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规定与本公告不符的，以本公告为准。  商务部  2013年12月3日 |